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사청구서

신청인 김 규 태

피신청인 김포군의료보험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만수

청 구 취 지

피신청인이 1994. 11. 1 신청인에게 한 1994. 11 분 의료보험료 금 22,900 원 부과 처분 중 금 12,000 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신청인의 지역의료보험조합 가입 경위 및 부과 보험료

신청인은 처와 2 자녀와 함께 주소지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의료보험 실시 직후인 1988. 1 피신청인 조합에 지역피보험자로 가입하여 현재 피신청인조합으로부터 매월 금 22,000 원의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고 있으며, 1994. 11. 1 피신청인조합으로부터 1994. 11 분 보험료 금 22,900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으나 위와 같은 부과처분 중 금 12,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항에서 보듯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통 부분은 의당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령관계검토

가. 의료보험법 제 1 조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 2 조에서는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 4 조 제 3 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주민은 당연 적용 피보험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되며,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부과하는 보험료는 모두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등 피보험자의 의사와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나.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49 조 제 3 항에서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순등에 따라 내국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조합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조합 정관은 일용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운용은 국민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서는 국민 모두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평등하고 공평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은 부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3. 피신청인 처분의 위법성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위 의료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 및 능력비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다음에서 보듯이 금 22,900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보험료로서 세대당 보험료 금 1,800 원, 피보험자 1 인당 금 1,400 원씩 4 인 합계 금 5,600 원, 능력비례산정방식에 따른 보험료로서 소득비례 보험료로서 금 14,500 원, 소유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 금 1,000 원 등 도합 금 22,900 원이 됩니다.

나. 피신청인조합 정관 규정의 적법성 여부

(1). 의료보험법상 보험료 산정기준 요소

의료보험법 제 49 조 제 2 항에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같은 법 제 50 조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 항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1)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2) 피보험자의 수 등으로 그 산정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정관상에서 정하는 기준은 위 내용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등급에 따른 단가에 관한 것 이외에는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신청인조합의 위법한 산정 기준의 검토

(가). 피신청인조합 정관 제 44 조 (세대별 기준 항목)

세대별 기준 항목은 피보험자의 수라는 산정요인과 중복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의료보험법상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 86 조 제 1 항에서 모법에서 규정한 산정요소인 피보험자 수를 "세대당 정액 및 피보험자 1 인당 정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세대당 기준액을 보험료산정기준의 요소로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보험자 수라는 산정요소와 중복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위 시행령에 터잡아 제정된 피신청인조합 해당 정관 규정도 이 범위 내에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신청인조합의 신청인에 대한 동 부분에 해당되는 보험료 금액 1,800 원의 부과처분은 위당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정관 제 43 조의 2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재산비례보험료는 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산정요소가 아닐 뿐 아니라 특히 본건 재산들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요소인 농지와 거주지인 주택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소득비례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비례보험료와 별도로 독립한 보험료산정요소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역시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산정요소가 아니므로 위임받은 바도 없는 산정요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법 제 49 조 제 3 항 후단에서 "등"으로 표시한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위 의미는 위와 같은 2 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하부개념에 관한 것일 뿐이지 이와는 다른 새로운 산정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4. 전심절차 경유현황 및 심사결정시에 대한 반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의 위와 같은 보험료 부과처분이 부당하여 1994 말경 위 처분에 대하여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로부터 1995. 2. 28 경 동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받았던 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비교조합 정관은 모범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바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를 능력비례보험료로 보아 소득비례 재산비례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재결 내용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인은 위와 같은 재결에 대하여 여전히 불복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구하고자 이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5.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조합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간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모범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보험료 산정요소를 시행령에서 추가함으로써 근거없이 부과되었고, 나아가 소득의 안전이 되는 재산을 보험료산정 요소로 삼음으로써 이중으로 보험료가 산정됨으로써 신청인에게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부당하여 일부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신청서 부분

1 봉

1. 심사결정서 송부 및 심사결정서

각 1 봉

